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Incheon, Economic Capital City

- 지방자치관련 법령 중심 -

# 최근 제·개정 법령

입법정책담당관실

# 【 2012. 11. 20 ~ 2012. 12. 17 】

❖ 자세한 법령정보 : http://www.law.go.kr/ ⇒ 최신법령정보 ⇒ 공포법령

## [ 법률, 대통령령 및 부령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171호, 2012.11.23)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39호, 2012. 5. 23. 공포, 2012. 11. 24. 시행)됨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등으로 알리도록 하여 정기예방접종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24193호, 2012.11.23)

#### 1. 제정이유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를 두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1425호, 2012. 5. 23. 공포, 11. 24. 시행)됨에 따라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및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의 장이 국제경기대회의 유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회의 명칭, 기간·장소 및 준비일정 등이 포함된 대회 개최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의견수렴과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회 유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나.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및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등이 되고,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는 대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며,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 수립(안 제15조 및 제16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에는 사업의 기본방향 및 개요, 부지조성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3.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209호, 2012.11.27)

### 1. 개정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액을 산정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외에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68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시행자의 협의성립확인 신청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협의성립확인 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3조제2항)

인감제도 운영에 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협의성립 확인을 위한 신청 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나.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28조)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 시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되,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 집단을 선정하고, 추천대상 집단 및 추천 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함.

다. 보상전문기관 범위 확대(안 제43조제1항제7호)
공익사업 증가에 따른 원활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상전문기관에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외에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포함되도록 함.

### 3.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4206호, 2012.11.27)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72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을 도로, 철도, 수도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정하는 한편,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관련 사무를 국가로 환원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해양부령 제541호, 2012.11.29)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관련 사무를 국가로 환원하는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206호, 2012. 1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 등을 신청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이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해양부령 제543호, 2012.11.30)

### 1. 개정이유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1471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시 제출서류(안 제9조의2 신설)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공고 당시 이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여 계속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도로 관리청에 사업의 진행 상황을 신고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하도록 함.

나. 도로대장의 작성 및 기재사항 등 구체화(안 제15조 및 별지 제20호서식)

도로대장 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시설물 제원 및 안전시설 조서

등 도로대장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적정보 등이 표시된 준공도면과 지형도면을 도로대장과 함께 관리하도록 하며, 도로대장의 형태에 따른 보관방법 등을 정함.

다.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의 전자도면 제출(안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도로대장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도로 굴착공사 또는 주요지하매설물 설치 공사를 마친 때 제출하는 설계도면이나 준공도면은 전자도면으로 제출하도록 함.

라. 도로점용허가 취소의 절차와 방법(안 제22조의2 신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점용목적을 위배한 경우나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도로 관리청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사실을 조사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도로 관리청은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하도록 하는 등 도로점용허가 취소의 절차와 방법을 정함.

마. 민원 처리기간 조정(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
민원 처리기간을 현실화하여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처리기간을 2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아치 및 육교 사용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하는 도로점용허가신청 및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의 처리기간을 4일에서 7일로 연장하며,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의 처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함.

### 3.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12.07)

### 1. 개정이유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대상을 확대하되, 흡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1142호, 2011. 6. 7. 공포, 2012. 12. 8.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등의 넓이를 규정하고,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의 시설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의 단계적 확대(안 제6조제1항)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를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5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영업소 등으로 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영업소 등으로 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휴게음식점영업소 등으로 함.

나.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대상 추가(안 제6조제2항)

흡연자의 담배연기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이 빈번한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 및 부속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추가함.

다. 흡연실의 설치 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및 별표 2)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의 경우 흡연실을 실외에 설치하되, 옥상에 설치하거나 시설의 출입구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도록 함.

라.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방법(안 제6조의2 및 별표 3)

지금까지 담뱃갑 앞면과 뒷면에만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뱃갑 옆면에도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를 1544 - 9030으로 함.

마.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안 제7조의4제2항)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하도록 함.

### 3.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1534호, 2012.12.11)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시행자가 재정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개발사업시행지역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173호, 2012.12.11)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용업 및 미용업 영업자는 영업소의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하도록 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외부에도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충분한 가격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화된 업종 간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미용업(피부)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1527호, 2012.12.11)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교육전문직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시·도교육청 차원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조직·인력관리에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는 바, 교육감 소속 직원의 인력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시·도교육감에게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직 교육전문직원과 국가직 교육공무원(교장, 교감, 교사) 상호간의 전직·전보를 보장하기 위해 인사교류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 제11530호, 2012.12.11)

### 1.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일정기간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비(實費) 변상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수령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기능직과 계약직의 폐지 및 일반직 등으로의 통합(안 제2조 및 부칙 제3조 등)

1) 기능직 및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

2) 인사관리 방식과 직무분야가 유사한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약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으로써 직종 체계의 구분과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함.

나.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도의 도입(안 제26조의5 신설)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직권면직 절차 등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실비 변상 및 보상의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안 제4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이나 특수한 연구과제 처리에 따른 보상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비 수령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해양부령 제550호, 2012.12.11)

1. 개정이유
도시공원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원조성계획에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도시공원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며, 도시공원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역사공원에 역사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도시공원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도시공원의 부지에 있는 대학 소유 토지에 학생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예방(안 제8조제3호다목, 안 제10조제2항 신설)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예방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도시공원의 계획·조성·관리 시 범죄 예방의 일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함.

나. 역사공원에 조례로 정하는 역사 관련 시설 설치(안 제9조제1항제6호)
주제공원인 역사공원의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역사공원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역사 관련 시설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역사공원의 주제에 맞는 공원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에 학생기숙사 설치 근거 마련(안 제11조제2항제10호 신설, 안 별표 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공원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대학 소유의 도시공원 부지에 학생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도모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5호, 2012.12.11)

1. 개정이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정기검사의 이행기간을 명확히 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 선량 측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 이 규칙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 이행기간 명확화(안 제4조제3항)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3년마다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검사 이행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아, 정기검사 기간을 이전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규정함.

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검역검사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10조제2항)

안전관리 책임자 신고 시 안전관리 책임자가 방사선사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방사선사의 의료기사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2012.12.1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행정 업무상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데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27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제11543호, 2012.12.11)

1. 개정이유

바다와 연안을 주제로 개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 성과를 지속적

으로 실현·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추진할 주체로써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을 설립하고,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을 설치·운영하며,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계획에 따라 해양박람회특구를 지정·고시하는 등 성공적 사후활용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관리·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가 발전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12년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관리·보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기부금품 및 사업수입금 등으로 조달함(안 제5조).

라.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기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을 설치·운영함(안 제11조).

마. 재단은 박람회 시설의 효율적 사후활용을 위하여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4조).

바. 국토해양부장관은 사후활용 계획에 따라 해양박람회특구를 지정·고시함(안 제15조).

사. 재단은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의 실시계획 및 변경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신고, 용도변경, 골재채취의 허가 등 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19조).

자.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또는 특구 내에 사업을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시설과 부지의 매각 및 임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2.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1537호, 2012.12.11)

1. 개정이유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현행 전통시장의 정의를 현시대에 맞게 새롭게 재정의하고, 상권활성화사업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을 해당 구역이 모두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곳에서만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지역으로 완화하며,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고,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영세한 무등록시장에 대하여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용역점포의 비율 50퍼센트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으로 정의함

(안 제2조제1호).

나.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중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을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으로 조정함(안 제2조제4호나목).

다.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못한 곳에 대하여 전기, 가스, 화재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마.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안 제40조제3항 후단).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정비사업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2.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 제11531호, 2012.12.11)**

1.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인 구현과 교육청 조직·인력구조의 선진화를 위하여 시·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며, 일정기간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비(實費) 보상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수령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기능직과 계약직의 폐지 및 일반직 등으로의 통합(안 제2조 및 부칙 제4조 등)

1) 기능직 및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

2) 인사관리 방식과 직무분야가 유사한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약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으로써 직종 체계의 구분 및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함.

나.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지방공무원 전환(안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71조제1항 단서)

1)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장학사,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원의 신분을 지방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함.

2) 교육전문직원의 징계 중 강등의 효력과 관련하여, 계급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함.

다.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 계급 구분 및 직군·직렬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도 도입(안 제25조의5 신설, 안 제30조의5제1항 단서 신설)

1)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직권면직 절차 등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계급 구분 및 직군·직렬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을 두어 특수한 직위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라. 실비 보상 등의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안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보상이나 특수한 연구과제 처리에 따른 보상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비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함.

마. 명예퇴직수당 환수 요건 확대(안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1)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정년 전에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퇴직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 수당은 환수할 필요가 있음.

2)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수뢰·횡령 등 금품 비리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함.

### 3.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해양부령 제552호, 2012.12.12)

### 1. 개정이유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정하고, 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건축물의 대지 조성 시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하는 옹벽 높이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 절차(안 제2조의2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나. 사전결정서 송부기한 단축(안 제5조제1항)

국민의 건축 편의를 위하여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사전결정서를 송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전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함.

다. 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해체공사계획서의 제출(안 제24조제1항 전단)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첨부대상 건축물 명확화(안 제24조제1항 후단 신설)

종전에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 건축물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마. 건축물의 대지 조성 시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하는 옹벽의 높이 기준 조정(안 제25조제2호)

지금까지 3미터 이상의 옹벽만을 콘크리트구조로 하도록 하였으나 집중호우에 따른 축대 붕괴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하는 옹벽의 높이를 2미터 이상으로 조정함.

### 3.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227호, 2012.12.12)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396호, 2012. 3. 21. 공포, 9. 22. 시행)되어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와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직권면직 대상자의 출석·사실조사 등을 처리할 때에는 징계의결의 절차를 따

르도록 함으로써 직권면직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2.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488호, 2012.12.1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속 재활용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등의 경우에는 시설 증설 등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50 퍼센트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완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 등의 변경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환경성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7호, 2012.12.13)

1. 개정이유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제 도입과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55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등급 결정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관광사업의 평가기준 변경(안 제7조)

1) 등급결정제 도입에 따라 등급결정기준을 현행 평가기준과 차별화하고 두 제도가 연계 운용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함.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에 '이용자의 만족도' 사항은 삭제하고, 방문객 수, 매출액 증대 여부 및 주민참여도 등 사업성과와 등급결정에 따른 등급 유지·향상 노력의 정도를 포함함.

3)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함에 따라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한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등급 유지·향상 노력과 연계시킴으로써 등급제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농어촌관광사업의 품질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나.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 도입(안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신설)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 및 관광농원사업과 농어촌민박사업 중 등급 결정을 신청한 사업을 등급 결정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등급결정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그 대상과 시기를 정함.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등급결정 부문을 정하고, 부문별로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함.

3) 등급결정을 할 때 현장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등급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등급결정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

4) 등급결정제도의 활성화 및 농어촌관광사업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결정된 부문별 등급의 인터넷 공표 및 표식물 제작 지원 등의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 중 일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로의 이양 등(안 제9조, 제11조, 제17조 및 제18조)

1)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인증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도농교류활동 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3.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기획재정부령 제304호, 2012.12.14)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가산세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 고지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납세자 및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에 가산세별로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관련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174호, 2012.12.17)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충분한 가격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하는 한편,

집단급식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용수저장탱크에 소독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식중독 예방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